

2023년도 SW안전 제품·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안내서

2023. 3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Ministry of Science and ICT



정보통신산업진흥원
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

목 차

I. 사업 개요	1
II.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	4
III. 과제 신청 접수	10
IV. 과제 선정 방안	13

【별첨】 전산접수 매뉴얼

□ 사업 목적

- SW안전 중요분야에 SW안전기술을 적용한 SW안전 제품·서비스의 수요맞춤형 실증 지원을 통해 SW안전 新시장 창출 및 전문기업 육성 추진

□ 추진 근거

-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(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), 제27조(사업)
-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7조(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), 제31조(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)

□ 주요 사업내용

- 교통, 에너지, 재난관리, 사회안전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SW안전 개발 프로세스 도입·적용 및 SW안전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실증 추진

* **SW안전** :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①SW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②**안전기능**(사전 위험분석 등을 통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능) **미비**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**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**를 말함 (SW진흥법 제2조(정의) 제8호)

** **지원분야 예)** 자동차, 철도·지하철, 항공, 도로, 에너지, 항만·해상교통, 보건 의료, 환경·식용수, 재난관리, 치안방법·사회안전, 생활안전 등

- SW융합분야의 SW안전 확보에 요구되는 SW안전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·적용한 제품·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성·사업성 검증 지원
- SW안전 관련 新시장 창출과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실증 지원 결과의 Practice化 추진

< SW안전 제품·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주요 내용 >



□ 추진 체계 및 역할

○ 사업 추진 체계



○ 기관별 역할

구 분		주 요 역 할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관리주체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○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○ 사업총괄관리
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 (전담기관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○ 세부 과제 공모 및 협약 ○ 과제관리, 예산집행 및 정산, 성과평가 ○ 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
평가위원회	과제 선정 및 결과 평가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선정평가, 최종결과평가 등
	사업비심의·조정 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종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○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
컨소시엄(사업수행기관) (주관·참여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○ 과제 진행현황 및 최종 보고 ○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

□ 사업 추진 일정(안)

지원과제 공모 (‘23. 3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담기관(NIPA) * 지원과제 개요, 지원자격, 지원대상, 지원내용 등 공고
↓	
과제신청서 접수(‘23. 3~4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컨소시엄 → 전담기관(NIPA)
↓	
과제 선정평가 및 사업비 심의·조정(‘23. 4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담기관(NIPA) * 서류 및 발표평가(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) * 전담기관은 평가전담부서를 통한 평가 실시(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) * 과업내용·사업비 등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기관(지원과제) 확정 및 통보
↓	
협약체결(‘23. 5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담기관(NIPA) ↔ 사업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* 최종 선정된 사업수행기관(주관기관·참여기관)과 NIPA 간 협약체결
↓	
과제 수행(‘23. 5월~11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
↓	
출연금 교부(1차) 및 착수회의(‘23. 5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연금 교부: 전담기관(NIPA) → 사업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• 사업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/전담기관(NIPA)
↓	
수행상황 점검(현장실태조사) (‘23. 9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담기관(NIPA) → 사업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* 과제수행현황 점검, 사업비집행현황 점검
↓	
출연금 교부(2차)(‘23. 9월) 및 과제 최종보고(‘23. 11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연금 교부: 전담기관(NIPA) → 사업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• 최종 보고: 사업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→ 전담기관(NIPA)
↓	
사업결과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(‘23. 12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가시행: 전담기관(NIPA) → 사업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• 정산제출: 사업수행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) → 전담기관(NIPA) * 전담기관은 사업지원부서를 통한 정산위탁(회계법인)

※ 상기 추진 일정(안)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II

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가. 지원 개요

공모방식	○ 자유공모
지원분야	○ 교통, 에너지, 재난관리, 사회안전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 * 지원분야 例 : 자동차, 철도·지하철, 항공, 도로, 에너지, 항만·해상교통, 보건의료, 환경·식용수, 재난관리, 치안방법·사회안전, 생활안전 등
지원대상	○ SW안전 제품·서비스를 개발·공급하는 SW기업(서비스 개발·공급기업), SW안전 제품·서비스를 도입·활용하는 수요기업·기관(기업, 공공기관, 지자체, 국가기관 등), SW안전 컨설팅기관(기업) 간 컨소시엄
지원기간	○ '23년 협약체결월 1일 ~ 23년 11월 30일 (약 7개월)
지원예산	○ 총 4억원, 과제당 2억원 내외
지원조건	○ 총사업비의 75%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(민간부담금 25% 이상)
지원내용	○ SW안전기술 도입·적용 및 SW안전 제품·서비스의 기술성 및 사업성 실증에 필요한 제반 비용 (자세한 내용은 "나. 세부 내용" 참조)

나. 세부 내용

- 지원대상 : 「SW안전 제품·서비스 개발·공급하는 SW기업 + SW안전 컨설팅 기관(기업) + SW안전 제품·서비스를 도입·활용하는 수요기업(기관)」 컨소시엄
 - 기술력 및 사업화 의지가 높은 중소·중견 SW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며, SW안전 제품·서비스를 도입·활용코자 하는 수요기업(기관)과 SW안전 컨설팅기관(기업)은 참여기관이 됨
 - * 주관사업수행기관은 SW안전기술 도입·적용 및 SW안전 제품·서비스 실증 등 담당
 - ** 참여사업수행기관 중 SW안전 컨설팅기업(기관)은 제품·서비스에 SW안전 개발 프로세스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 담당
 - *** 참여사업수행기관 중 수요기업(기관)은 민간기업, 공공기관, 지자체, 국가 기관 등으로 선도적으로 SW안전 제품·서비스를 도입·활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

◆ 컨소시엄 구성

구분	역할	자격요건	기관수	주요역할
주관사업 수행기관	개발·공급	기술력 및 사업화 의지가 높은 중소·중견 SW기업	1개만	SW안전 제품·서비스 실증 및 과제 전체를 총괄적으로 수행
참여사업 수행기관	컨설팅	SW안전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기업	1개 이상	제품·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SW안전 컨설팅 수행, 주관기관의 실증 지원, 수요기관의 도입·활용 지원
		대학, 연구소 등 기관		
	수요기업 (기관)	제한 없음 (*단,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불가)	1개 이상	SW안전 제품·서비스를 도입·활용하고자 하는 기업·기관

- * 컨소시엄은 주관사업수행기관 1개, 참여사업수행기관(컨설팅기업(기관)) 1개 이상, 참여사업수행기관(수요기업(기관)) 1개 이상 등 총 3개 이상 기업/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.
- *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(창업예정기업 불가)
- * 해외기업이나 해외기관은 본 과제에 참여 불가(필요시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협력)
- *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(복수지원 불가)

◆ 중소·중견기업 구분

-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에 따른 기업을 말함
-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

□ 지원 기간 : 협약체결월 1일 ~ 2023.11.30. (약 7개월)

※ 공모 절차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□ 지원 예산 및 규모

○ 총 4억원 이내, 2개 과제 내외(과제당 2억원 이내 지원)

※ 사업비 심의·조정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.

□ 지원 조건

- (정부출연금) 총사업비의 75%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
- (민간 매칭) 사업에 참여하는 **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(총사업비의 25% 이상)에 대해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을 부담하여야 함**

◎ 총사업비 = 정부출연금 + 민간부담금 (현금 + 현물)

- * 정부출연금 : 사업수행기관(컨소시엄)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
- * 민간부담금 : 사업수행기관(컨소시엄)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

- 총사업비 내 민간부담금 비중은 기업 유형에 상관없이 25% 이상 유지
- 총사업비 내 민간부담금은 컨소시엄(주관사업수행기관+참여사업수행기관)이 부담하되, 기관 간 매칭비율은 제한 없음
- 민간부담금 현금/현물 비율은 제한 없음 (현물만으로 구성 가능)
- 민간부담금 중 현물의 경우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
- (사업비 집행)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서버 등 장비 구입에 앞서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
- (기술료) 해당사항 없음

□ 지원내용

- SW안전 확보에 요구되는 SW안전기술 도입·적용 및 SW안전 제품·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성·사업성 실증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
- ① SW융합분야 SW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SW안전 개발 프로세스 적용
 - (SW안전 요구정의) 위험원 분석을 수행하고,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SW안전 제품·서비스 개발을 위한 SW안전 요구사항 정의
 - (SW안전기술 적용) SW안전 관련 해당 산업계의 국제 표준 및 국가 표준 등을 참조하여 SW안전 개발 프로세스 적용 추진
 - * SW안전 요구사항 정의, SW안전설계, SW안전구현, SW안전시험 등

② SW안전 제품·서비스의 기술성·사업성 검증 지원

- (실증 환경구축) 기술성 검증을 위한 개발시스템 등 환경 구축·운영
 - * 컨소시엄 필요에 따라, 주관사업수행기관 內 또는 참여사업수행기관(수요) 內에 기술성 검증 환경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
- (기술성·사업성 실증) 개발된 SW안전 제품·서비스를 실증 환경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등 기술성 검증 또는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성* 검증 추진
 - * SW안전 제품·서비스의 시장성, 사업화 가능성, 경제성 등을 검증
- (사업화 지원) SW안전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인증 취득, 국내·외 판로개척 등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
 - * 본 사업 관련 국내외 시험·평가·인증, 국내외 SW안전 제품·서비스 관련 전시회·박람회·설명회 등 판로개척, 기타 사업화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

< SW안전 제품·서비스 실증 지원 사례 (예시) >

- ◇ DMS(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) 제품에 SW안전기술을 적용하고 실증함으로써 자율주행 솔루션의 SW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
- ◇ 상용차 군집주행/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에 활용될 Level3 자율주행 상용차 장치 및 SW 개발에 ISO26262 ASIL C 등급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술을 적용하여 SW안전 확보

* 사업비 지원규모는 사업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등 지급될 수 있음

※ 컨소시엄별 SW안전 제품·서비스의 준비도·개발수준·개발생명주기·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표, 추진내용 및 범위 등을 제안할 수 있음.

□ 지원 제외 대상

-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(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) ②항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수행기관(기업), 대표자, 총괄책임자(참여기관 책임자포함)

<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>

구분	사전지원 제외대상(평가대상 배제)
검토 기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업의 부도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) 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다만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 5.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대표이사가 「청년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.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 7.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.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

-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수행기관(기업), 대표자, 총괄책임자(참여기관 책임자포함)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

📄 **제재정보 검색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s://www.ntis.go.kr/>)**
 ※ 과제·참여관리 > "제재정보조회"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

-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
 -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 -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
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
-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
-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-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
□ 기타 사항

- **(결과물 귀속)**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, 시설 및 시작품, 지적재산권,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 (주관·참여)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
※ 상세한 기준은 「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」 제7조 적용
- **(결과물의 활용)** 사업 종료 후,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될 수 있음
※ 공개되는 내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전 상호 협의함
- **(성과 활용 및 확산)** 실증 사례의 성과 확산 등을 위해 사업수행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컨퍼런스, 워크숍, 세미나, 인터뷰, 성과분석, 만족도조사 등에 반드시 참여 필수
※ 성과활용기간은 사업종료년도부터 5년간이며, 전담기관 요청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함
- **(개인정보보호조치)**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·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·고시, 지침·고시 해설, 가이드·자율점검 등 제반의무*를 준거해야 하며 법·규정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·기관에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이 있음
※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(www.pipco.go.kr)와 개인정보보호포털(www.privacy.go.kr)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

Ⅲ

과제 신청 및 접수

□ 사업계획(신청)서 전산접수 안내

○ 사업계획(신청)서 다운로드 후 작성

-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nipa.kr)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SW안전 제품·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 → ‘사업계획서 작성요령’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접수로 신청

○ 전산 접수('23. 3. 27.(월)부터 전산접수 가능)

-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nipa.kr) 알림마당 → 우리원 관련 웹사이트 → 행정지원 → SMART(사업성과관리시스템) → 과제책임자 (연구책임자)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전산접수

○ 공모 마감 : '23. 4. 7.(금) 15:00

□ 사업계획(신청)서 전산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

<사업계획(신청)서 전산접수시 유의사항>

- 사업계획(신청)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사업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
- 사업계획(신청)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하시기 바라며,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, 입력내용은 사업계획(신청)서와 동일하게 작성
-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
- 전산접수는 사업계획(신청)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, 최종'제출'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'제출'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.
(* 반드시 별첨의 "전산접수 매뉴얼"을 숙지)

※ 전산접수 마감시한 : **2023. 4. 7.(금), 15:00까지**

※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 불가하며,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~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

※ 전산 시스템 문의 : ☎ 070-5151-8239

□ 제출서류 : 사업계획(신청)서 및 첨부서류

첨부 서류 목록	제출대상					
	주관 기관 (기업)	참여사업수행기관(컨설팅기관(기업), 수요기관(기업))				
		기업	국가기관 /지자체	대학/ 연구소	공공기관 /협회	기타 비영리
○ 법인 등기부등본	○	○	X	○	○	○
○ 사업자등록증	○	○	X	○	○	○
○ 참여의사 협약서	○	○	○	○	○	○
○ (최근 3년)재무제표	○	○	X	X	X	X
○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	○	○	X	X	X	X
○ 신규과제 자기진단서	○	○	○	○	○	○
○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○	○	○	○	○	○
○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	○	○	X	X	X	X
○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	○	○	○	○	○	○
○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(해당기관)	○	○	○	○	○	○
○ 현금출자(납입) 협약서(해당기관)	○	○	X	X	X	X
○ 현물출자 협약서	○	○	X	X	X	X
○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서	○	X	X	X	X	X
○ 평가항목 조건표	○	X	X	X	X	X

※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전산접수 함(원본대조필 불필요)

※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이용(기준유사도 60점 설정), (NTIS→과제참여→유사과제→정보입력 후 인증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)

※ 위의 첨부서류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, 선정이 확정된 기업(기관)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(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, 청렴이행각서 등)를 요청할 수 있음

□ 사업신청(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)시 유의사항

○ 전산접수 파일 업로드시 파일명 안내

- 사업계획서 파일명 : (주)주관사업수행기관명 사업계획서.pdf

○ 사업계획서는 PDF 파일만 제출 가능

- 원본(아래한글) 파일은 향후 선정 과제에 한하여 요청 시 제출

- 첨부서류는 파일형식에 구분없이 제출 가능
- 첨부서류는 먼저 각 주관/참여사업수행기관별로 ZIP 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번 더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
-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자료는 전산접수만 가능하며, 우편제출 및 직접제출 등은 불가
- 파일형태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후 원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(특별히 원본대조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요청 예정)
- 전산접수 오류방지 및 테스트를 위해 접수마감일 7일전~2일전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작성 및 업로드 하면서 계속 “저장” 및 “제출”을 클릭, 가급적 접수마감 1일전까지 모든 자료를 등록 후 최종 제출 요망

< 시스템 입력요령 >

- ① 입력한 내용이 자동 저장되지 않으므로 내용 작성 중 수시로 “저장” 버튼을 클릭
- ② 마감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매 저장 후 반드시 “제출” 버튼을 클릭하여 대비(제출버튼 클릭 후 제출하겠냐는 팝업창까지 다시 클릭해야 제출됨)
- ③ “제출” 버튼을 클릭해도 마감시간까지는 계속 수정제출 가능
- ④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“제출” 불가
- ※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,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제출에 실패할 수 있음
- ※ 신청 페이지에서는 “제출” 버튼을 클릭하였더라도, SMART 시스템 상에 최종 제출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제출로 인정되지 않음

※ 발표를 위한 PPT파일은 사업신청시 제출 불필요

➔ 발표 PPT 파일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하며, 서류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 대상에게 별도 통보함

□ 문의처

구분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사업관련 내용 문의	NIPA SW안전팀 김동하 수석	043-931-5472	donghakim@nipa.kr
전산등록 관련 문의	NIPA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	070-5151-8239	smart@nipa.kr

IV

과제 선정 방안

1 선정 절차

- 사업계획(신청)서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,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·발표 평가, 사업비 심의·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

< 단계별 과제 선정 절차 >

선정 절차		주체	내용	비고
1단계	적합성 검토	정보통신산업진흥원	○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	평가 대상 결정
2단계	서면평가	과제평가위원회	○ 각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	발표평가 대상 선정
	발표평가	과제평가위원회		종합심의 대상 확정
3단계	종합심의	사업비심의·조정위원회	○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지원과제 확정	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

- * 평가 및 사업비 심의·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- *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,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

적합성 검토

- (개요) 사업계획(신청)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,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
- (평가대상) 접수과제
- (검토방법) 사업계획(신청)서, 첨부·제출 서류 검토 등 NIPA 내부검토
- (주요 검토항목) 신청자격, 신청서류, 재무건전성, 사업비산정, 참여제한,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

< 적합성 검토 항목 >

구분	내용
신청자격	주관사업수행기관, 참여사업수행기관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 과제 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여부
신청서류	사업계획서, 붙임서류 등 신청서류 적정여부
재무건전성	주관사업수행기관, 참여사업수행기관의 재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적정여부
사업비산정	사업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준수 등 사업비 산정 적정 여부
참여제한	사업수행기관, 사업수행기관장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 과제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
중복성	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중복성 적정 여부

* 적합성 검토 결과, 중대 문제(사전지원 제외 대상, 제출서류 미제출 등) 발견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

□ 서면평가

- (개요) 사업계획서 등에 의한 1차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
 - ※ 접수된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
- (평가대상)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
- (평가방법)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 -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
 - ※ (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)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최종 과제 수의 3배수 내외* 과제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* 예상 선정 과제수(2개)의 3배수인 6개 내외
- (평가위원)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
- (평가기준) 사업목표 및 내용, 수행방법의 적정성,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역량, 제품·서비스모델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등(서면/발표 동일)

□ 발표평가

- (개요)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과제 우선순위 선정(고득점 순)
- (평가대상) 서류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과제
- (평가방법) 총괄책임자 발표*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 -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
 - ※ 필요시, 발표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사업비 심의조정 실시
- (평가위원)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
- (평가기준) 사업목표 및 내용, 수행방법의 적정성,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역량, 제품·서비스모델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등

< 평가기준 (서면평가/발표평가 동일) >

평가 항목	평가 기준	배점
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(20점)	○ 과제 추진계획과 사업목표와의 부합성	10
	○ 목표, 추진방법, 성과지표 등 추진계획의 명확성, 타당성	10
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역량 (40점)	○ 신청기관의 추진체계(컨소시엄) 구성의 적정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·공급기업인 중소·중견SW기업과 수요기관, 컨설팅기관(기업) 간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- 컨소시엄 내 역할분담의 적정성 	10
	○ 공급기업(중소·중견SW기업)의 과제 수행능력 및 추진의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SW안전 관련 제품·서비스 개발능력 및 과제수행 역량 - SW안전 제품·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제품·서비스 소유 또는 개발 관련 현황 및 수준 등 - 참여인력의 연구역량, 과제 추진의지 등 	10
	○ SW안전 컨설팅기관(기업)의 역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SW안전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과 지침에 대한 이해 등 SW안전 제품·서비스 실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수행 역량 - 참여인력의 연구역량, 과제 추진의지 등 	10
	○ 수요기관(기업)의 역량 및 SW안전 제품·서비스 도입·활용 의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품·서비스에의 SW안전 적용 의지 및 준비 정도 -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등 	10

평가 항목	평가 기준	배점
제품·서비스모델의 우수성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품·서비스모델의 우수성 - 제품·서비스모델의 기술적용 수준 및 구현 가능성 - 제품·서비스모델의 향후 지속적인 운영방안의 적절성 및 확산 가능성 	1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술성 실증 및 사업성 실증 등의 적정성 - 실증 기반구축, 기술성 실증, 사업성 실증 방안 등 	10
파급효과(지원효과)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사회적·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 - SW안전산업 활성화 기여 등 기술확산 효과 - 신시장 창출, 수출증대 수입대체 가능성 등 경제적 효과 - 일자리 창출, 공익, 안전, 약자보호 등 사회적 효과 - 글로벌 진출 목표 설정 및 티당성, 향후 글로벌 진출에 있어 본 사업의 활용성, 수출판로 확보, 인증 등 준비정도 	10
사업관리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정, 산출물, 보안,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- 일정, 산출물, 재무,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- 사업비 매칭,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- 성과 분석,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	10

※ 동점자 발생시 순위확정 기준

- 1) 파급효과 점수(총10점)가 높은순
- 2) 제품·서비스모델의 우수성 점수(총20점)가 높은순
- 3)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역량 점수(총40점)가 높은순
- 4) 사업목표 및 내용, 수행방법의 적정성 점수(총20점)가 높은순
- 5) 사업관리 점수(총10점)가 높은순

(* 위의 기준 적용후에도 순위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)

□ 종합심의 (사업비 심의·조정)

- (개요) 발표평가 결과(순위) 및 지원가능 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 과제 및 예산 확정
- (심의·조정대상)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
- (심의·조정방법) 과제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(안)을 확정된 후, 최종 지원과제 확정
 - *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
- (심의·조정위원) 사업·사업비 관련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
 - * 위원수는 상황에 따라 달리 구성될 수 있음

3

기타 유의사항

□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

- 과제 사업수행기관(주관·참여기관)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
- 과제 개시일 : 2023. 5. 1.(예정)
 - 사업 수행기간 : 2023. 5. 1. ~ 2023. 11. 30일
- * 사업 수행기간 및 과제 개시일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컨소시엄 구성시 유의사항

- 용어의 정의
 - ① 주관사업수행기관(개발·공급역할) : 기술력 및 사업화 의지가 높은 중소·중견 SW기업만 주관사업수행기관을 할 수 있음
 - ※ 중소·중견기업만 가능하며, 2개 기업이 공동주관은 불가
 - ② 참여사업수행기관 : 주관사업수행기관 이외의 모든 기관을 말하며 SW안전 컨설팅기관(기업)과 수요기관 2가지의 역할로 구분됨
 - 컨설팅기관(기업)(컨설팅역할) : SW안전 컨설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대학·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을 의미하며, 주관사업수행기관과 기술협력 및 공동으로 제품·서비스 실증에 참여하여야 함
 - 수요기관(수요역할) : SW안전 제품·서비스를 도입·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기업
 - ③ 용역기관 : 주관사업수행기관 또는 참여사업수행기관의 일부 과업을 용역으로 추진하였을 때 업무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경우, 계약을 통해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기업·기관
 - 사업계획서 상에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및 세부추진 내용을 포함한 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가(불필요한 용역은 지양)

- 주관사업수행기관 또는 참여사업수행기관(컨설팅기관(기업), 수요기관)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
※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 및 부속지침,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사업관리 관련규정의 용어 정의 참조

- 해외기업 및 해외기관은 본 과제에 참여 불가(필요시 주관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사업수행기관이 개별적으로 협력)

□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

○ 민간부담금

- 총사업비(100%) = 정부출연금(75% 이내) + 민간부담금(25% 이상)
- 민간부담금 : 정부출연금 외에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(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, 대학/연구소, 비영리기관 등도 포함)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
- 민간부담금 = 현금 + 현물로 구성 (현물만으로 구성 가능)

- 정부출연금을 받는 주관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(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 현금)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

* 통장사본은 최종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

- 사업계획(신청)서 양식 상 소요명세표에 있는 비·세목만 산정 가능

○ 인건비 산정

- 주관사업수행기관/참여사업수행기관(컨설팅) 소속 참여 연구원(기존, 신규)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
 - * 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심의·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축소 조정될 수 있음.
- 참여사업수행기관(수요) 소속 참여 연구원은 신규인력에 한하여 현금으로 산정 가능하며, 기존인력은 현물로만 산정가능
 - * 대기업이 수요기관인 경우는 신규인력이라도 현금인건비 산정 불가

- 신규인력은 2023.1.1.이후 채용한 직원이 본 사업의 참여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임
 - ※ 신규인력 인건비 산정 시 신규 채용 예정인 인건비 산정 가능
- 사업인력이 아닌 지원인력 인건비는 사업인력 총 인건비의 20% 이내에서만 편성 가능
- 운영비(특근매식비, 차량비, 복리후생비, 기타 운영비), 직무수행경비(직책수행경비),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
- 재료비 성격의 비용은, 소모성 재료는 일반수용비로 산정하고, 장비부품 등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할 것
-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(PC/노트북,프린터,복사기 등)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(임차료에 편성)
 - * 신규인력의 PC/노트북에 한하여 자산취득비로 구입이 가능하며,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(별첨 파일인 “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서식”의 “사업비 소요명세 작성 방법” 참고)
- 사업비 편성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
 - * 사업비심의·조정위원회 및 NIPA 검토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
- 컨소시엄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규모는 기관별 역할,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
 - * 본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은 개발·공급기업인 중소·중견SW기업과 SW안전 컨설팅기관(기업)에 지원
- 현물 사업비 편성시 현물인정 범위는 인건비, 연구시설, 장비 및 재료비만 해당
 - * 인건비(사업수행기관의 급여기준),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(사업수행기관 장부가의 20%를 “현물” 부담금으로 산정), 견품, 시약, 재료비(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), 생산·판매 중인 연구기자재, 시설, 재료비(수행기관이 생산·판매가로 책정한 원가)
-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내 기관 간 제품/시스템/서비스 등 거래 불가
-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시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

- 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심의·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(정부출연금 등)는 축소·조정 및 비목별 추가/변경/삭제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

□ 사업 관리 적용 규정

- 정보통신산업진흥법,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행정규칙
 - *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 규정
 - **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, 「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, 「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」, 「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」, 「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」, 「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」 등 6개 지침
- 소프트웨어 진흥법
-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

□ 보고 및 평가

- 사업 수행 보고, 현장 실사 및 평가(착수·중간·최종보고, 결과평가)
 - 사업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실시
 -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 현장실사 실시
 - 사업 결과평가 : 사업 종료시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결과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“매우우수(90점 이상)”, “우수(80점~89점)”, “보통(60점~79점)”, “미흡(50점~59점)”, “매우미흡(50점 미만)” 으로 평가
- 월간 보고
 - 사업 수행 계획 대비 추진 현황에 대한 월간보고서 서면 제출

□ 성과 관리

- 전담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-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실행
 - 수행기업은 지금까지 수행한 고용 창출 실적과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수행계획서에 제안해야 함
 -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할 때 고용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

□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
- 지원 신청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
- 정부출연금은 총 2회에 걸쳐 사업수행기관의 교부(지급) 신청에 의해 분할 지급되며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총괄신청하되, 사업비 산정·편성에 따라 사업수행기관별로 지급 예정
 - * 예산 교부 및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편성된 사업비로 주관·참여기관간 제품/서비스 등 모든 거래 불가
- 주관·참여사업수행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방법과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고 집행해야 함

□ 사업비 정산

-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
 - ※ 정부출연금, 민간부담금 등 사업비가 편성된 모든 사업수행기관이 정산대상에 포함됨

□ 관리 시스템

- NIPA 사업관리시스템(SMART) (<https://smart.nipa.kr>)
 - 사업 신청, 협약의 체결·변경, 사업비 지급 신청, 월간보고서 / 중간보고서 / 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 등
- KCA 사업관리시스템(PMS) (<https://pms.kca.kr>)

- 협약서류(변경 포함) 등록, 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용내역 입력(등록), 사업비 계좌정보 등록,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등록,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등록 등

※ 사업규정, 사업비규정 등 관련 규정 제·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이 추가 등 변동될 수 있음

□ 기 타

- 수행사업의 성과활용기간은 사업종료 연도부터 5년으로 하며, 수행기업은 해당 기간동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후속조치 관련하여 업무 협조 요청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
- 제출된 일체의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사업 신청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